

2023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선단초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힘차게 움직이는 희망찬 계절에 가정에도 봄과 같이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3년 변경 시행되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시행 방안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가정학습 포함)**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서는 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국가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예시1) 기존 교외체험학습 20일, 가정학습 10일 사용 - 불가능(교외체험학습 연간 20일 초과)
예시2) 기존 교외체험학습 15일, 가정학습 3일 사용 - 가능(잔여일수 2일)
예시3) 가정학습 20일 사용 - 가능(잔여일수 없음)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
※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다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
※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시간은 1일로 간주함.
-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 신청서는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받거나 담임선생님께 사전에 요청할 수 있음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체험학습 신청 전 사전 확인, 학원 수강 불가)
-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단계	주체	내용	비고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학생 보호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교외체험학습 전까지 학생,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전 요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허가 여부 통보	담임교사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를 서면(또는 문자)으로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인솔자 및 학생	목적에 맞는 안전한 교외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학생 보호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 종료일 10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에게 사전 요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8일

선 단 초 등 학 교 장